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보도 일시 | 2022. 10. 26.(수) 18:00<br>2022. 10. 27.(목) 조간 | 배포 일시 | 2022. 10. 26.(수)       |
| 담당 부서 | 근로기준정책관<br>디지털노동대응TF팀                         | 책임자   | 과 장 박상윤 (044-202-7070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  | 주무관 이 현 (044-202-7559) |

##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플랫폼종사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근로복지 체계 구축 -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(22~26년) 수립 -

고용노동부는 10월 26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국토교통부·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‘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(대상기간: 2022~2026년)’을 심의·의결하였다.

근로복지기본계획은 근로의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.

이번 5차 기본계획은 “모든 일하는 사람을 아우르는 근로복지”를 목표로 정했으며, 이를 위해 3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.

- ① 근로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근로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
- ② 대·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해 기업복지 격차가 시장 내에서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, 운영 방법을 효율화
- ③ 취약계층별·근로주기별 맞춤형 지원, 기반 시설 구축 등 공공 근로복지 서비스는 필요한 부분에 선택과 집중

향후, 5년간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가 추진코자 하는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으며, 고용노동부 외에도 국토교통부,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에서 이번 정부에서 수행코자 하는 다양한 복지사업 등을 포함했다.

1)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증가, 저탄소·디지털경제의 확산 등 새로운 근로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.

우선, 특고·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사항(차별받지 않을 권리, 건강권, 산업안전 등)을 중심으로 법·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.

이와 함께 종사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\*도 병행할 계획이다.

\* 공정한 계약관행 형성을 위해 직종별 표준계약서 제·개정 및 분쟁해결시스템(조정·중재 등) 구축, 자율적 공제조합 설립 지원,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사업(이동노동자 쉼터 등) 지원,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추진

또한, 증가하는 돌봄 등 사회서비스 수요에 맞춰 가사근로자, 사회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근로여건 개선 등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.

한편, 저탄소·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취약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
‘사업전환 고용안정협약지원금’, ‘산업전환 특화훈련’, ‘노동전환지원금’ 등을 새롭게 추진하고, 향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

2) 정부의 직접지원보다는 대·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을 통해 기업복지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, 운영 방법을 효율화할 계획이다.

대기업 사내복지기금이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중소기업의 범위<sup>①</sup> 및 지원요건 완화<sup>②</sup>를 추진한다.

\* ① (현행) 1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→ (개선) 2.3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 
② (현행) 기본재산이 1인당 300만원 이상 → (개선) 200만원 이상인 기금

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복지지원 비율에 따라 대기업 사내복지기금이 사용할 수 있는 재원(출연금 및 기본재산) 범위도 차등 적용\*할 계획이다.

\* (현행) 대기업 자체 복지에만 사용 시 출연금의 50%, 출연금의 10% 이상 협력업체 지원 시 80%까지 사용 → (개선) 협력업체 지원비율에 따라 70~90%까지 차등

중소기업 복지지원 등 공익적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장기 비활성화 사내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요건 완화\* 등도 추진한다.

\* (현행) 사업주의 폐업, 타 기금법인 합병 등 제한적으로 해산 허용 → (개선) 기본재산의 일부를(예: 30% 이상) 중소기업 기업복지 등에 사용하는 경우 추가

### 3) 재원배분 효율화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 등 취약계층 근로복지 안전망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.

저소득 근로자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용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, 소득수준별로 지원방식 및 이자율은 차등화하는 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.

| 현 행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편(예시)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생활안정<br>자금용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용자방식: 대하방식</li> <li>▶ 기준: 중위소득 2/3이하</li> <li>▶ 이자율: 1.5%</li> </ul> | 저소득층<br>용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대하방식</li> <li>▶ 중위소득 1/2이하 ▶ 1.5%</li> </ul>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반 용자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이차보전</li> <li>▶ 중위소득 이하 ▶ 1.5% + α</li> </ul> |

※ 대하방식: 정부예산으로 직접 용자, 이차보전: 금융기관이 용자, 정부는 이자율 일부를 지원

체불로 인한 생계 곤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직자 대지급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용자 확대를 위해 사업주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요건\* 등을 완화한다.

\* 용자 한도액 상향(1억→1.5억), 상환기간 다양화(2년→3~4년분할), 사업주 기준(1년 이상 →6개월 이상 사업운영) 완화 등

또한, 취약 근로자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(직장 내 괴롭힘, 갑질 등) 프로그램 및 건강검진 지원도 확대하고, 장애인의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 직업 생활 유지 지원(보조기기 지원 및 출퇴근 비용 지원)도 강화한다.

### 4) 안정적 근로 여건 조성을 위해 근로주기별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한다.

사회초년생의 노동시장 정착 지원을 위해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을 강화하고, 주거시설이 부족한 국가 및 지방 산단 등에 공동임대 주택 공급 등도 추진한다.

또한, 일·가정양립 지원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고, 아이돌봄 지원가구 확대 등도 지속 추진한다.

‘중장년 새출발 크레딧’, ‘고령자고용지원금’ 등을 신설하여 중장년 전직 및 고령자 재도약도 지원한다.

## 5) 마지막으로 근로복지 기반 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다.

생활안정자금 지원방식 개편, 변제금 회수율 제고 등 효율적 채권관리, 유휴재원 활용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다.

또한, 근로자의 자산형성 기회 확대를 위해 조합원 참여권 확대 및 취득 기회 확대 등 우리사주제도 효율화도 추진할 예정이다.

아울러, 퇴직연금이 든든한 노후 대비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,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사전지정 운용제도(디폴트 옵션) 신설 등 퇴직연금 운영 방식을 개편한다.

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“이번 기본계획은 그간의 근로복지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특고·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까지 근로복지 대상에 포함하는 등 근로복지의 외연을 확장하여 약자 복지라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”라고 밝히며,

“정부의 직접지원보다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자율적 복지공유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고,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자 재원 배분 효율화 등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”라고 강조하면서,

“근로복지를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별첨: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